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박수빈 의원 외 33명
- 나. 의안번호: 제1107호
- 다. 발의일자: 2023. 8. 14.
- 라. 회부일자: 2023. 8. 21.

### 2. 제 안 사 유

- 향후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측되나 현재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데이터 역시 존재하지 않음.
- 최악의 폭염과 최장의 장마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속출하게 했고, 이 같은 피해는 사회불평등 문제로 점철되고 있음.
- 이상기후로 여겨온 현상은 일상이 되었고 이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매년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노출 실태와 피해 및 적응역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동 조례 제 21조제2항제4호의

적응대책, 그 외 관련 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사회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 요 내 용**

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 실태 등에 대한 조사 시행

(안 제22조의3제1항).

나.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저감 및 적응역량 향상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안 제22조의3제2항).

###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5.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 실태와 피해 및 적응 역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여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정의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일부 내용에 공감하는 바임.

다만, 관련 실태조사의 시행 빈도를 매년으로 설정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또한, 안 제22조의3제2항은 현행 조례 제21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에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지역 등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적응대책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임.

- 한편, 기후환경본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와 관련한 상위법 개정안 4건<sup>1)</sup>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바, 상위법 개정 이후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22조의3(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보호와 적응대책 마련을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실태, 피해 및 적응역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저감 및 적응역량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 윤영찬·강득구·어기구·김용민 국회의원 발의('23년 2월~3월)  
 - 환경노동위원회 1차 검토('23.4.25.) 후 계류 중